

충남대학교 교수회 규정

[시행 2019. 5. 1] [충남대학교학교규정 제1891호, 2019. 5. 1, 일부개정]



충남대학교 0428215103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 학칙(이하 "학칙"이라 한다) 제8조에서 정한 교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9. 5. 1>

제2조(회원) 교수회의 회원은 학칙 제7조의 전임교수로 한다.

제3조(조직) ①교수회는 단과대학·전문대학원(이하 "단과대학(원)"이라 한다) 교수회와 전교 교수회로 구분한다. <개정 2009. 5. 1>

②전교 교수회에는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정족수) ①교수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·의결한다. 이 경우 휴직자 및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자는 재적회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9. 5. 1>

②회원의 위임장은 회의성립 정족수에는 포함되나, 의결권으로는 행사될 수 없다.

③교수회가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의결하려는 경우에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9. 5. 1>

제5조(교수평의회) 교수회는 그 대의기구로서 교수평의회를 두며, 단과대학(원) 교수평의회와 전교 교수평의회로 구분한다. <개정 2009. 5. 1>

제2장 교수회

제1절 단과대학(원) 교수회

제6조(구성) ①단과대학(원) 교수회는 해당 단과대학(원) 전임교수로 구성된다. <개정 2009. 5. 1>

②5명 이상의 전임교수가 있는 직할학부 또는 특수대학원은 단과대학(원) 교수회에 준하는 교수회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09. 5. 1>

③기타의 직할학부, 특수대학원 및 부속기관 소속 전임교수는 본인이 선택한 단과대학(원) 교수회의 동의에 따라 해당 단과대학(원) 교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. <개정 2009. 5. 1>

제7조(기능) 단과대학(원)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09. 5. 1>

1. 학칙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
2. 단과대학(원)의 특성화 또는 장단기 발전에 관한 사항
3. 교육환경 및 교수의 복지에 관한 사항
4. 학장후보자의 선출. 다만, 전문대학원장 선출은 별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.
5. 단과대학 교수평의원 및 교수평의회장의 선출
6. 기타 학장 또는 평의회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

제8조(회의) ①단과대학(원) 교수회는 학장이 의장이 되며, 의장이 소집한다. <개정 2009. 5. 1>

②단과대학(원) 교수회가 제7조 제4호, 제5호 및 교수평의회장이 요청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단과대학 교수평의회장이 의장이 된다. 의장이 1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수평의회장 또는 소집을 요청한 회원이 연명으로 소집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4. 14, 2009. 5. 1, 2019. 5. 1>

③의장은 재적 회원 4분의 1 이상 또는 교수평의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교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4. 14>

제9조(위원회 등) ①단과대학(원) 교수회는 제7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5. 1>

②단과대학(원) 교수회는 제7조의 사항 중 각 학과·학부(전공포함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해당 학과·학부·전공교수회에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5. 1>

③제7조 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단과대학(원) 교수회에서 따로 정한다. <개정 2009. 5. 1>

제2절 전교 교수회

제10조(구성) 전교 교수회는 본교 소속 전임교수로 구성한다.

제11조(기능) ①전교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08. 4. 14, 2009. 5. 1, 2012. 4. 26, 2019. 5. 1>

1.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사항
2. 교수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
3. 부회장의 위촉 승인 및 감사의 선출
4. 교수회장에 대한 불신임
5. 교수회 예산 및 결산
6. 교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7. 학칙 및 제규정의 개·폐에 관한 사항
8. 대학의 중·장기 발전계획
9. 교육, 학사운영 및 학술연구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10. 대학의 구조조정과 통합에 관한 사항
11. 대학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기본사항
12. 각 부총장 및 처장, 본부장의 임명동의와 해임건의에 관한 사항
13. 대학평의회 교수평의원의 추천
14. 기타 대학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하여 총장 또는 회장이 심의를 요청 한 사항

②전교 교수회는 전교 교수평의회에 전항 제1호 및 제3호 이외의 사항의 심의를 위임한다.

③제1항 제2호 및 제6호 내지 제12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는 20일 이내에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장이 요청한 기일 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2조(회의) ①전교 교수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며, 의장이 소집한다.

②전교 교수회의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고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월에 소집한다.

③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, 평의원 과반수 이상 또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. 회장이 1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청한 회원 또는 총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5. 1>

제13조(임원) ①전교 교수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9. 5. 1, 2012. 4. 26, 2019. 5. 1>

1. 회 장 1명
2. 부 회 장 2명

3. 감사 2명
4. 사무처장 1명
5. 운영위원 5명

- ②회장은 전교 교수회를 대표하고, 교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전교 교수평의회의 의장이 된다.
- ③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 유고시에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감사는 전교 교수회의 재정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.
- ⑤사무처장과 운영위원은 회장을 도와 전교 교수회의 담당 업무를 집행한다. <개정 2009. 5. 1., 2012. 4. 26., 2019. 5. 1.>
- ⑥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14조(임원의 선출) ①회장은 선거일을 정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. 회장 선출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 <개정 2009. 5. 1>

- ②부회장은 회장이 총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.
- ③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④사무처장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. <개정 2009. 5. 1, 2019. 5. 1>
- ⑤운영위원은 회장이 평의원을 포함한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. <신설 2012. 4. 26, 개정 2019. 5. 1>
- ⑥임원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선출하거나 위촉하되,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15조(위원회) 전교교수회는 제11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3장 교수평의회

제1절 단과대학(원) 교수평의회

제16조(구성 및 기능) ①단과대학(원) 교수평의회의 평의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 <개정 2009. 5. 1, 2019. 5. 1>

1. 재적 회원 10명 이하 대학(원) : 1명
2. 재적 회원 10명 초과 대학(원) : 초과 재적 전임교수가 1명에서 30명에 이르기 까지 1명씩 추가

②학무위원과 부학(원·처·본부)장 이상의 주요 보직교수는 평의원이 될 수 없으며, 평의원이 학무위원 또는 주요 보직교수로 임명된 때에는 평의원을 보궐 선출한다. <개정 2009. 5. 1>

③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단,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④단과대학(원) 교수평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08. 4. 14, 2009. 5. 1>

1. 단과대학(원) 교원의 청원사항
2. 단과대학(원) 교수회가 위임한 사항

제2절 전교 교수평의회

제17조(구성) ①대학의 발전과 운영 및 교수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교 교수평의회를 둔다.

②전교 교수평의회는 단과대학(원) 교수회에서 선출한 교수평의원과 전교 교수회 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09. 5. 1, 2019. 5. 1>

제18조(기능) 전교 교수평의회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교교수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5. 1>

제19조(회의) ①전교 교수평의회는 전교 교수회의 회장이 의장이 되며, 의장이 소집한다.

- ②전교 교수평의회의 정기회는 매학기 2회로 하고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월, 6월, 9월 및 12월에 소집한다.
- ③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 평의원의 4분의 1이상 또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한다. 의장이 1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면, 소집을 요청한 평의원 또는 총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5. 1, 2019. 5. 1>
- ④학무위원과 주요 보직교수는 전교 교수평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, 전교 교수평의회는 해당 학무위원과 주요 보직교수에게 자료제출, 출석,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5. 1>
- ⑤직원협의회, 조교협의회 및 총학생회의 대표는 전교 교수평의회에 참석하여 직원, 조교 또는 학생의 이해에 직결되는 사안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, 교수평의회는 직원협의회, 조교협의회 또는 총학생회의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20조(임원) ①전교 교수회의 임원은 전교 교수평의회의 임원을 겸한다.

- ②임원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선출하거나 위촉하되,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21조(운영위원회 등) ①전교 교수평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, 부회장 및 사무처장 및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평의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. <개정 2008. 4. 14, 2009. 5. 1, 2012. 4. 26, 2019. 5. 1>

- ②전교 교수평의회에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 특별위원회에는 평의원이 아닌 교수, 직원, 조교, 학생, 동문, 학부모 및 학외인사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.

- ③전교 교수평의회는 필요한 경우 업무를 소관 분과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 <신설 2009. 5. 1>

제4장 보 칙

제22조(재정) 교수회의 경비는 학교예산(대학회계 보조금)과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 <개정 2009. 5. 1, 2019. 5. 1>

제23조(회계연도) 교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한다.

제23조의2(준예산)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교교수회 총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교수회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9. 5. 1.]

제24조(규정개정 등) ①이 규정의 개정을 위하여는 제4조에 의한 전교 교수회의 심의·의결과 학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- ②전교 교수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필요한 세칙을 제정·운영할 수 있다.

부칙 <제1891호, 2019. 5. 1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